

##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 Policy Tasks in the Enforcement of the Police Order With Regard to Electronic Security

Kyungsu Ha<sup>a,\*</sup>, Sangchul Lee<sup>b,1</sup>

<sup>a</sup> Daegu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730, Namcheon-ro, Namcheon-myeon, Gyeongsan-si, Gyeongsangbuk-do, 712-721 Rep. of KOREA

<sup>b</sup> Yong In University, 134, Yongindaehak-ro, Cheoin-gu, Yongin-si, Gyeonggi-do, 449-714 Rep. of KOREA

### ABSTRACT

In this research, The Police Order No. 2013-1, which is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was analyzed and the relevant policy tasks were presented.

The policy task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nstruct the statistics base, the establishment of the terms related to false alarm and false call, emergency button, and sensing signal and the development of the appropriate term to replace the electronic security guard are needed. Second, the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should build the response system to abide by the 112 report standards of the police order. Third, the police should reexamine the establishment of the emergency report objects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Fourth, the reinforcement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supervision to enforce the police order strictly is required.

### KEYWORDS

electronic security  
the police order  
the selective report system  
electronic security  
112 report  
standards  
false alarm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인 감독명령 제2013-1호를 분석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의무 등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긴급신고의 대상을 특정하는 선별신고제도의 시행을 규정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로 첫째, 통계기반의 구축을 위한 오경보와 오신고, 비상버튼과 감지신호에 대한 용어의 정립과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기계경비업체는 이 감독명령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셋째, 경찰은 선별신고제도의 긴급신고 대상 설정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한다. 넷째, 이 감독명령을 엄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행정규제와 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기계경비  
감독명령  
선별신고제도  
기계경비  
112신고기준  
오경보

© 2014 Korea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All rights reserved

\* Tel. 82-053-810-7000. Fax. 82-811-0836. Email. security@dufs.ac.kr

1 Corresponding author. Tel. 82-031-332-6471. Email. lsc0707@korea.com

### ARTICLE HISTORY

Received Apr. 20, 2014

Revised Apr. 20, 2014

Accepted Jun. 27, 2014

## 1. 서론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기계경비업체의 112신고로 인한 경찰력의 낭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규제강화나 특별관리 등의 시도가 있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경찰은 기계경비업체에 대한 보다 구속력 있는 대책이 강구되었고 마침내 감독명령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2012년에 기계경비업자와 해당 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 개선'을 위한 감독명령 제2012-1호를 시행하였고, 2013년에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으로 개정된 감독명령 제2013-1호를 7월 1일자로 시행하였다. 내용상 동일한 두 감독명령의 시행취지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개정된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의 주요 과제였던 오경보 문제에서 경찰 112 오신고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그 취지를 선회했다. 표면적으로는 감독명령의 목적이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기계경비업체의 출동대응 등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기계경비업체에 대한 112신고의 제한조치인 선별신고제도의 시행에 있다. 이는 감독명령의 목적인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과는 괴리가 있다. 또한 감독명령의 시행으로 기계경비업체의 신고감소를 체감하지만 통계기반의 부재로 실효성을 확인할 수가 없다.

기계경비업체는 경보에 대한 현장 확인에 앞서 사전 경찰신고를 통한 범죄예방의 기능이 제한되고, 특정한 장소나 특수한 경보를 제외하고는 긴급신고를 할 수 없으므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이 감독명령의 시행으로 기계경비업체는 112신고를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경보에 대한 현장확인을 해야 하므로 출동대응에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기계경비에 대한 감독명령 제2013-1호의 시행에 있어 경찰과 기계경비업체의 정책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정착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진행하게 되었다.

## 2. 기계경비업무와 감독명령

### 2.1 기계경비

기계경비는 인력경비에 대응되는 경비 형태로서 기존의 인력에 의존하던 경비방식에서 벗어나, 첨단기계장비를 사용하여 경비대상시설에 사람 없이도 실시할 수 있는 경비형태를 말한다(Berger, 1979: 11-12). 경비업법 제2조에서는 기계경비업무를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기계경비업무가 범죄예방 기능 뿐 아니라 대상시설에서 발생하는 도난에서부터 화재 감지, 가스누출 감지, 시설이상 감지 등 다양한 정보를 감지하고 경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앞으로 '기계경비'라는 용어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Chung, Tae-Hwang · So, Seung-Young, 2010: 149).

### 2.2 감독명령

명령이란 국가행정권에 의하여 정립되는 법규, 즉 법규명령을 말한다(Kim, Chul-Yong, 2013: 32). 입법권은 국회에 속하는 것이나, 복잡한 현대사회의 구조와 국가기능의 확대에 따라 사회현상의 세부적 사항을 모두 법률로 규정하기는 불가능하므로, 법률은 그 대강만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실제 법집행을 담당하는 행정부가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한국의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은 「경비업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경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경비업자 및 경비지도사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은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경비업자의 주사무소 및 출장소와 경비원배치장소에 출입하여 근무상황 및 교육훈련상황 등을 감독하며 필요한 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경찰에서는 이 규정을 '감독명령'이라고 지칭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실효성을 담보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감독이란 이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으로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 진출하여 지도 점검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는 관할경찰서의 지도감독의 근거가 된다(Choi, Seok-Oh, 2011: 48).

Table 1. Effective Police Order at This Time (2014 present)

| 명칭       | 시행일자       | 적용대상                 | 주요내용                           |
|----------|------------|----------------------|--------------------------------|
| 제05-2호   | 2005.9.1.  | 전체 경비업자, 전체 경비지도사    | 경비업자와 경비지도사의 준수사항              |
| 제06-1호   | 2006.2.6.  | 시설경비·신변보호업자, 일반경비지도사 |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 배치시의 준수사항          |
| 제09-1호   | 2009.10.1. | 전체 경비업자, 전체 경비지도사    | 경비원 배치시의 준수사항                  |
| 제10-1호   | 2010.6.1.  | 호송경비업자               | 호송경비의 인원편성, 업무수행 및 호송차량 안전장치 등 |
| 제2013-1호 | 2013.7.1.  | 기계경비업자,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                  |

**2.3 기계경비업무에 대한 감독명령 제2013-1호**

기계경비에 대한 최초의 감독명령으로 제2012-1호가 있었으나 이 감독명령은 제2013-1호의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감독명령 제2013-1호는 2013.7.1.에 시행된 것으로 본문 11조와 별지 1호 서식 ‘기계경비업자의 보고사항’ 및 ‘감독명령 제2013-1호에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으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2. Comparison of Police Order No. 2012-1 with No. 2013-1

| 구분    | 감독명령 제2012-1호                  | 감독명령 제2013-1호    |
|-------|--------------------------------|------------------|
| 발령기관  | 경찰청                            | 경찰청              |
| 발령취지) | 기계경비 오경보 개선                    |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    |
| 적용대상  | 기계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업자 및 기계경비지도사 |
| 시행시기  | 2012. 7. 1 부터                  | 2013. 7. 1 부터    |
| 구성    | 본문                             | 제1조~제9조          |
|       | 부칙                             | 관계기계경비원에 대한 경과조치 |
|       | 첨부                             | 기계경비업자의 보고사항(서식) |
| 비고    | 기계경비업자의 보고사항, 감독명령에 대한 업무처리 요령 |                  |
| 비고    | 감독명령 제2013-1호 시행으로 폐지          |                  |

감독명령 제2013-1호는 「경비업법」상의 기계경비업자와 기계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를 대상으로 오경보로 인한 불필요한 경찰신고를 방지하고 출동대응 등 의무를 명확히 하여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계경비업체의 명확한 112신고기준을 정립하고,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 및 통계기반 구축을 위한 조치이다. 이 감독명령에는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이라는 취지에 상당하는 선별신고제도와 기계경비업자의 의무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선별신고제도란 기계경비업체가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이하 ‘경보’라 한다)에 출동대응 후 범죄관련성을 확인하여 경찰로 신고하는 기준으로 Fig 1.과 같이 확인신고와 긴급신고로 구분된다.

1) 감독명령 제2012-1호와 제2013-1호의 취지가 본문에 명시된 것은 아니나 경찰청으로부터 팩스 등으로 수신한 서면 표지와 문서파일의 제목에는 각각 ‘기계경비 오경보 개선을 위한’과 ‘기계경비 112신고 기준’으로 명시되어 있어 이를 감독명령의 취지로 해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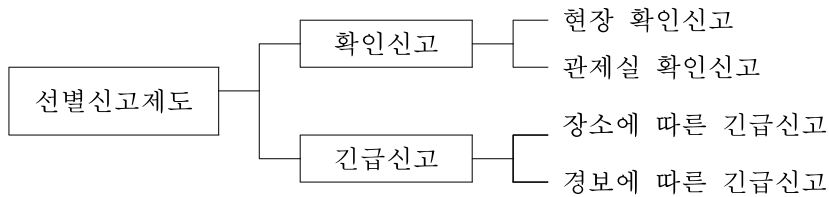


Fig. 1. Classification of The Selective Report System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에 대하여 선별신고제도의 확인신고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기계경비업체는 모든 경보에 대해 현장출동 등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경찰로 신고하여야 한다. 즉 기계경비업체는 경보가 발생하면 현장출동, 전화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대응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12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이는 경보에 대한 대응능력 없이 112 신고에만 의존하는 일부 업체들의 구태를 타파하고, 무분별한 112신고를 방지하여 경찰의 출동이 급박하게 필요한 국민에게 공공재인 경찰서비스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다.

현장 확인신고와 관제실 확인신고의 방법으로 구분되는 확인신고는 Fig 2.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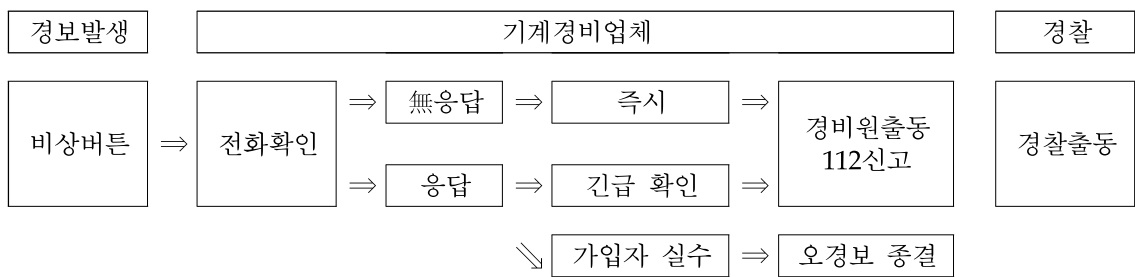


Fig. 2. Handling Process of Check Report System

기계경비업체의 112신고는 확인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출동기계경비원을 출동시킨 후 즉시 경찰로 긴급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긴급신고에는 장소에 따른 긴급신고와 경보 형태에 따른 긴급신고가 있다.

### 3. 기계경비업무 감독명령 시행의 정책과제

감독명령 제2013-1호의 시행으로 일선 경찰관은 기계경비업체의 112신고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감독명령의 시행과정에는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먼저 기계경비업체의 112신고 현황에 대한 경찰 통계기반의 부재로 감독명령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감독명령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감독이나 행정규제로 여전히 무분별한 112신고를 선행하는 기계경비업체도 상존하고 있다. 기계경비업체에서는 긴급신고대상의 지정에 대한 타당성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러한 감독명령 시행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한다.

#### 3.1 통계기반 구축과 용어의 정립

감독명령 제2013-1호에 대한 해설 및 업무처리 요령에 의하면 이 감독명령의 의의를 “기계경비업체의 명확한 112신고 기준을 정립하고, 독자적인 범죄예방 능력 확보와 더불어 ‘통계기반 구축’을 통해 기계경비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이라고 설명한다. 즉, 이 감독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계경비의 112신고에 관한 통계기반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풀이된다. 그러나 현실은 기계경비에 대한 지표 또는 지수들을 획득하기 위한 용어조차 정립이 되어있

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계경비업체와 경찰에 통용되는 다음 용어들에 대한 개념정립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오경보와 오신고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개념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기계경비업체와 경찰의 ‘오경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있다. 기계경비업체에서는 오경보(誤警報, false alarm)를 통상 경비용기계장치의 오동작(誤動作)과 계약상대방측 사용자들의 경비용 기계장치 오작동(誤作動) 등의 오발보(誤發報)을 오경보로 인식하는 반면, 경찰은 기계경비업체로부터 접수한 신고 중 실제 범죄가 발생하지 않은 오신고(誤申告, false call)를 오경보로 인식해 온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경비업체의 오경보(혹은 오발보)를 개선하고 선별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경찰에서 인식하는 오신고와 경비업체가 인식하는 오경보를 보다 명확히 정의하고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감지기와 비상버튼에 의한 경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감지기(sensor)란 빛이나 소리, 압력, 변위, 진동, 자계 혹은 전계 등 각종 물리량이나 이온, 가스성분, 당분 등 여러 가지 화학량을 신호처리하기 쉬운 전기나 빛의 신호로 변환하는 소자 또는 장치로 기계경비에서 방법용으로 사용하는 감지기로는 자석감지기, 열선감지기, 적외선감지기, 유리감지기 등이 있다. 이러한 방법용 감지기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작동상태(set mode)에서 주로 외부의 침입자를 검출하는 용도로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비상벨이라 부르는 비상버튼은 기계경비시스템의 작동이나 작동해제 상태와 관계없이 경비대상시설내에 사람이 있을 때 조작하여 관제시설에 이상신호를 전송하는 형태로 비상상태가 발생하거나, 구급이 필요한 때에 주로 사용된다. 이처럼 감지기의 동작신호와 비상버튼의 작동신호는 경찰이나 기계경비업체에서 차등대응이 필요하고 오경보나 오신고에 대한 통계기반 구축을 위해서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경비업법 제2조에 경비지도사는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자로 일반경비지도사와 기계경비지도사로 구분하고, 경비원은 경비업자가 채용한 고용인으로서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한다. 그런데 이 감독명령에는 “기계경비원”이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기계경비원을 다시 ‘출동기계경비원’과 ‘관제기계경비원’으로 구분하고, 출동기계경비원은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 관제기계경비원은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경보를 수신·분석하여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을 내리는 등 대응조치를 취하는 경비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모법(母法)인 경비업법에서 경비원을 일반경비원과 특수경비원으로 구분하였음에도 감독명령에서 출동 및 관제기계경비원을 별도로 정의하였으므로 출동 및 관제기계경비원을 일반경비원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지 아니면 경비원의 구분을 일반·특수·기계경비원으로 수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한국의 경비업자·경비원·경비지도사는 대체로 ‘경비’라는 용어에 대한 저항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감독명령에서 정의하는 출동 및 관제기계경비원이라는 용어가 현장에서 용해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기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출동 및 관제기계경비원을 대체할 적절한 용어의 개발이 필요하다.

### 3.2 선별신고제도 시행에 따른 기계경비업체의 대응

경찰은 차별적 경찰대응(DPR)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112신고에 출동우선 순위를 부여하여 관리하고 있다. 범죄로부터 인명·신체를 보호하거나 신속한 범인검거가 필요한 신고는 긴급출동(CODE 1), 이에 속하지 않으나 경찰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신고는 일반출동(CODE 2), 불법주차·생활소음 등 현장조치가 불필요한 신고는 비출동(CODE 3)으로 분류하여 긴급 신고에 경찰력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Table 3. Status of 112 Report Acceptance (2012.12.31.)

| 구분   | 총계         | 출동신고      |         |           | 비출동신고     |
|------|------------|-----------|---------|-----------|-----------|
|      |            | 소계        | CODE 1  | CODE 2    | CODE 3    |
| 접수건수 | 11,771,589 | 7,882,146 | 878,314 | 7,003,832 | 3,889,443 |
| 비율   | 100%       | 67.0%     | 7.5%    | 59.5%     | 33.0%     |

Table 3.의 2012년 112신고접수 현황에 의하면 전체 신고의 90% 이상이 긴급한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들이고, 여기에는 기계경비업체에서 접수되는 신고건도 일부분을 차지한다. 오신고는 일선 경찰관의 성실하고 정확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선별신고제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감독명령 제2013-1호의 시행에 이르게 되었다. 이 감독명령은 기계경비업체에 대하여 확인신고 원칙을 준수할 것을 규정했다. 이 원칙은 기계경비업체에 경보가 발생하면 현장출동, 전화확인, CCTV 확인 등을 통해 대응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하며, 경보의 범죄관련성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찰로 112신고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조치이다.

Table 4. Police Report Status of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 업체수 | 경비업체 자체출동 | 경찰신고건수(신고율)   | 경찰신고 중 범죄 관련성이 없는 신고 |
|-----|-----------|---------------|----------------------|
| 140 | 8,710,342 | 310,275(3.5%) | 286,542(92%)         |

Table 4.는 2011년도 경찰에서 집계한 기계경비업체의 112신고현황으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신고가 전체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기계경비업체에서는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 경보번호 접수 당시 112신고의 여부가 보험처리 등 손해배상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경보 발생 당시에 출동기계경비원의 대응조치가 불완전한 점이 있더라도 즉시 112신고가 병행되었다면 기계경비업체에서는 책임을 다소 경감시키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기계경비업체에서는 확인신고 원칙의 시행으로 무분별한 112신고를 지양하고 경비대상시설에 관한 경보를 수신한 때에는 신속하게 그 사실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위한 차량 및 인력의 확충 등 대응체제의 구축하고 오경보 방지를 위한 사용자교육, 시공 및 운영에 대한 부문별 업무품질을 개선해야 한다.

### 3.3 긴급신고 대상 지정의 타당성 검토

이 감독명령의 선별신고제도에는 확인신고와 더불어 긴급신고에 대한 구분과 예외조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긴급신고란 경보 중 경찰의 긴급한 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경보 수신 즉시 기계경비 관제실에서 출동기계경비원에게 출동지령 후 경찰로 신고하는 것으로 장소에 따른 긴급신고와 경보의 형태에 따른 긴급신고로 구분한다.

장소에 따른 긴급신고는 국가중요시설·관공서의 사무실·외국공관·금융기관 내 금고·금은방·휴대폰 판매점에 설치한 비상버튼 또는 감지기에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위해세력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 국가경제와 국방 등에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고, 외국공관은 기계경비 가입시설이라도 경찰관의 동행 없이 공관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긴급신고의 대상으로 지정함은 타당하다. 하지만 관공서와 금융기관 내 금고·금은방·휴대폰 판매점에 대해서는 그 지정의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 감독명령에서는 경보의 형태에 따른 긴급신고의 경우를 특정하고 있다. 그것은 ‘비상버튼 방식에다 감지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는 기계경비의 시스템의 구조에서는 거의 발생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비상버튼 방식은 경비대상시설에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기계경비시스템의 작동상태(mode: 세트 또는 해제)와 관계없이 24시간 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으로 주로 비상통보, 구급통보, 화재이보 등에 사용된다. 그리고 감지기에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는 대체로 경비대상시설에 사람이 없는 상태 즉, 기계경비시스템의 작동(세트)상태에서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비상버튼은 유인(有人)상태에서, 감지기에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는 무인(無人)상태에서 발생하므로 이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현실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다만, 주택 등에서 사람의 재실(在室)상태에서 주로 내부 감지기의 작동은 멈추게 하고 외곽의 감지기만 동작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이 있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면 비상버튼과 감지기의 동시 또는 순차적인 경보는 발생하기 어렵다. 이는 기계경비시스템의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오류로 이 규정은 “2중(二種) 이상 혹은 이종(異種)의 감지기에서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경보가 발생하는 경우”로 개정할 것을 제안한다.

### 3.4 감독 및 행정규제의 강화

112신고에 있어서도 일반시민과 기계경비업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은 불가피한 현실이다. 기존에는 허위신고에 대하여 제도 위주로 대응해 왔으나, 개정된 경범죄처벌법 등을 적극 적용하여 현행법 체포는 물론 구체적 사안에 따라서는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하게 되었다.

Table 5. Status of False Call Punishment(Police briefing, 2013)

| 구분            | 허위신고   | 계     | 비율    | 형사입건 |    |     | 경범죄처벌 (즉심) |       |    |    |
|---------------|--------|-------|-------|------|----|-----|------------|-------|----|----|
|               |        |       |       | 소계   | 구속 | 불구속 | 소계         | 벌금    | 구류 | 과료 |
| 2011년         | 10,479 | 1,382 | 13.2% | 27   | 2  | 25  | 1,355      | 1,313 | 25 | 17 |
| 2012년         | 10,465 | 1,141 | 10.9% | 57   | 6  | 51  | 1,084      | 1,028 | 43 | 13 |
| 2013.<br>1~7월 | 8,410  | 780   | 9.3%  | 33   | 2  | 31  | 747        | 700   | 31 | 16 |

또한 112 허위신고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하여 허위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규정은 여전히 미약하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관련 처벌조항으로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와 형법 제137조 등이 있으나 거짓신고에 의한 처벌은 대부분 형법이 아닌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하므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2010년 통계에 의하면 지난 5년간 112 허위신고는 매년 1만여 건이 발생해 이중 1천500여건이 처벌돼 왔으며 지난해의 경우 98% 정도가 경범죄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2)을 받았다(Kim, Tae-Won · Yang, Seung-Beom, 2010: 8).

미국과 영국 등에서도 가해자의 행위가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일 경우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 악의적·상습적 거짓신고자에게는 막대한 손해배상액을 부과하고 있다.

Table 6. False Call Punishment Regulations of Other Countries

| 국가 | 긴급신고번호 | 처벌규정  |
|----|--------|---|
| 미국 | 911    | 징역 1~3년형 또는 최대 2,800만 원의 벌금, 비긴급서비스는 일부 유료          |
| 영국 | 999    |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900만 원 이하의 벌금, 국가가 거짓 신고자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
| 호주 | 000    | 3년 이하의 징역   |

「경비업법」 제19조7항에는 감독상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경비업자에게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으로는 1차 위반시에는 경고, 2차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월, 3차위반시에는 허가취소로 규제하고 있고, 해당 기계경비업체에 선임된 기계경비지도사에게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 1년의 범위 내에서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규정으로 감독명령 제2013-1호의 112신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기계경비업자에게는 최대 허가취소, 기계경비지도사에게는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기계경비업체에서는 감독명령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112 신고를 실시하였다고 하여 최대 허가취소나 경비지도사의 자격정지 처분은 가혹하게 여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버튼이나 감지에 의한 경보로 범죄와의 관련성이 우려되면 여전히 긴급신고를 남용할 가능성이 높다.

기계경비업체는 112신고를 확인된 긴급 상황에서만 이용해야 한다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경찰은 긴급신

2) 2013.5.22.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거짓신고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서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상향조정하였다.

고의 남용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규제와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계경비업체에 대하여 감독명령의 위반으로 행정 처분을 실시한 사례는 현재까지 없었다. 따라서 이 감독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을 엄정히 집행하는 한편 처벌수위를 상향조정해야 한다.

#### 4. 결론

한국의 기계경비업체는 영리 추구의 편의성과 업체가 감수해야할 위험을 회피할 목적으로 112신고를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기계경비업체의 112신고 중 90%를 상회하는 범죄와의 관련성이 없는 오신고는 이에 대응하는 경찰의 조건을 보다 엄격하게 개정하는 원인이 되어 기계경비업체에 대한 사실상의 112신고 제한조치인 감독명령 제 2013-1호의 시행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 감독명령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형식에 그칠 경우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계경비업체는 여전히 안일한 대응으로 국민적 손실을 끼치게 될 것이다. 기계경비업체에 대한 112신고 기준인 선별신고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은 보다 강력한 시행의지와 세밀한 규제 기준을 설정하여야 하고 기계경비업체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대응체제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Berger, David L. (1979). *Industrial Security*. Boston: Butterworth Publishers. Inc.
- Choi, Seok-Oh (2011). A study on the problems of the legislation system of security law and reform measures.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ongju University.
- Chung, Tae-Hwang · So, Seung-Young (2010) A study on the developmental plan of Alarm Monitoring Service.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22.
- Kim, Chul-Yong (2013). *Administrative Law*, Seoul, Gosigyesa.
- Kim, Tae-Won, Yang, Seung-Beom (2010). Analysis and Improvement Report call 112. Kit 2010 national audit policy III.
- Mazerolle, Lorraine., Rogan, Dennis., Frank, James., Famega, Christine., & Eck, John E.(2003), *Managing Citizen Calls to the Police: An Assessment of Non-Emergency Call System*, NIJ: U.S. Department Justice:(1-1)-(10-9) Summary. Kansas City, Mo.; Kansas City Police Department.
- National Police Agency (2013). No. 2013-1 The Police Order.
- National Police Agency (2013). Riot police officers stand disturbance corresponding policy actions and strongly false declaration. Police briefing.